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999. 4. 14
교육사회위원회

1. 제안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2. 제안및회부일자

- 제안 : 1999년 4월 1일 제출
- 회 부 : 1999년 4월 1일

3. 제안이유

- 수수료 감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수수료 감면사항 개정

-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로 개정

○ 수수료 감면사항 신설

-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

5. 검토의견

수수료 감면조항중 1개호를 개정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에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를 포함하였고, 1개 호를 신설하여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감면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